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10항”을 “법 제59조의3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령란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거.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 마. (생략) <table><tr><td>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u>성범죄</u>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td><td>법 제90조 제2항</td><td>350만원</td></tr><tr><td>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td><td>법 제90조 제1항</td><td>700만원</td></tr></table> 아. ~ 파. (생략) 하. (신설) 거. (신설)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u>성범죄</u>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2항	350만원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1항	700만원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2. ----- 가. ~ 마. (현행과 동일) <table><tr><td>바. 장애인관련기관-----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td><td>----- -----</td><td>-----</td></tr><tr><td>사. 법 제59조의3제10항----- ----- ----- ----- -----</td><td>제1항제1호</td><td>-----</td></tr></table> 아. ~ 파. (현행과 동일) <table><tr><td>하.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td><td>법 제90조 제1항제2호</td><td>500만원</td></tr></table> <table><tr><td>거.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td><td>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td><td>300만원</td></tr></table>			바. 장애인관련기관-----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 -----	-----	사. 법 제59조의3제10항----- ----- ----- ----- -----	제1항제1호	-----	하.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거.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	300만원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u>성범죄</u>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2항	350만원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1항	700만원																				
바. 장애인관련기관-----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 -----	-----																				
사. 법 제59조의3제10항----- ----- ----- ----- -----	제1항제1호	-----																				
하.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거.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1